

의안  
번호

27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토보고서

운 영 위 원 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구의회사무국)

의안번호	276호
제 출 자	박영섭의원 외 8명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한상규

## 1. 제안이유

- 2020년부터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되어 연구단체에 지원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정의하고 연구활동비 등 지원기준에 적용하여 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구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 정의 (안 제2조)
- 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규정 (안 제4조제1항)
-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 라. 입법예고 : 2024. 4. 4. ~ 4. 8.

#### 4.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연구단체 의정책개발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의원연구단체 의 정책연구용역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정책개발 및 의정연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23년 11월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 1)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화하고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관련조례 참고안 2) 과 관련하여 제 2조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 비슷한 내용의 제9조 (의원연구단체 지원), 제10조 (연구활동비의 지급 등)를 통합하고 ‘제10조제1항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2회 이상 분할 지급’내용을 폐지함.

○ 개정된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 에서 의원 연구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 연구역량 강화 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의원정책 개발비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한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함께 의원역량개발비 등을 활용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역량을 강화 하고 조례 개정 이후에도 행안부의 이러한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연구단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상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 다만, 본 조례 제3조에 의원연구단체 (이하 “연구단체 ” 로 한다)에 따라 이하 조례 내용을 연구단체로 수정하는 하고 , 제3조의 조문이 제4조로 변경에 따라 별지( 1호, 2호, 3호 4호 )서식의 조례 인용문구를 이에 맞게 조문항을 수정하고, 별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서식의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하다고 사료됨.

---

## ※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조

#### 의원정책개발비

- 1 지방의회 정책연구 및 입법 개발 수요 충족을 위함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9. 7. 신설, 2020년부터 편성
  -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의회비(편성목 205) 중 별도 한도로 관리
- 2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 계약시에만 사용 가능
- 3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의원 개인이 아닌 의원 연구단체에만 지원 가능
  - ※ 세미나·공청회·간담회·자문회의 개최 등에는 사용 불가(연구활동비 활용)
  - 지방의원수×500만 원 ※ 편성 한도 범위 내 지자체 자율 편성

### 2) 행정안전부 의원 연구단체 구성·운영 관련 조례 참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단체”란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